

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75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'99. 12. 16
제안자 : 조성제의원외7인

개정이유

- 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
- 공무원여비규정이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고, 동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같이 개정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
-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제7조(여비지급기준)의 “국.내외 여비는 별표의 국.내외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”를 국·내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의 별표1의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.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-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의 비고 3

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
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여비지급기준) 국. 내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의장, 부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, 의원은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

[별표1] 및 [별표2] 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 ·
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여비지급기준) ① <u>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국외 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u></p>	<p>제7조(여비지급기준) <u>국. 내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의장, 부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, 의원은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</u></p>